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 정관

1998. 09. 04 제정
 1999. 09. 18 개정
 2002. 01. 11 개정
 2003. 05. 17 개정
 2003. 11. 21 개정
 2004. 09. 18 개정
 2005. 05. 21 개정
 2007. 11. 17 개정
 2012. 11. 17 개정
 2016. 11. 19 개정
 2020. 04. 10 개정
 2020. 09. 28 개정
 2021. 05. 15 개정
 2022. 10. 14 개정
 2026. 07. 16 개정

제1장 총 칙	정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Korean Association for Architectural History)”(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광명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건축역사와 이론, 비평의 학문적 계승과 발전 및 건축문화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건축역사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건축역사학에 관한 학술지,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및 건축정보화에 관한 사업 • 건축역사학에 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답사회 등의 개최. • 건축역사 연구 및 전통건조물 보존 복원에 기여하는 학술연구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행정·재정·사업 관련 조사 연구용역 •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 타 본회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목적 사업의 수혜자는 적정한 실비 및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정회원 :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자로 한다. · 대학과 대학원의 건축계통 학과를 졸업한 자. · 대학에서 건축계통 이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건축역사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 · 건축역사에 관계되는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심이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준회원은 대학과 전문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상임이사회가 준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③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입회비 및 회비는 면제한다. ④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 학술단체 포함)로서,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나 그 단체
	제8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준회원은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술논문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본회 학술지도 받아 볼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와 회비) ①회원(명예회원 제외, 이하 같음)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의 금액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③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입회비 · 정회원 회비(1년 단위) · 준회원 회비(1년 단위) · 특별회원 회비(1년 단위) · 종신회비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정지) ①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사망은 탈퇴로 본다. ②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은 재적회원으로 보지 않는다. 단, 미납 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명시한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본회의 <송헌논문상>을 비롯한 각종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시상 및 표창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1인) 부회장(4인 이하) ·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회장은 지역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③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본회 또는 한국건축역사학에 현저한 공로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고문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상임이사는 이사를 대표하여 본 학회의 제반실무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부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선출된 회장의 직무 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2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재적 정회원으로 보지 않는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및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 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를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 메일 등을 통해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제1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선출된 회장의 직무 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정관 제49조에 따른 모바일 또는 이 메일을 이용한 투표는 서면 결의로 보지 않는다. 제30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단, 해외 출장 중인 이사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상임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규정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32조(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

제7장 재산과 회계	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 취임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3조(논문편집위원회) • 논문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장과 논문편집부위원장, 논문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논문편집위원장과 논문부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논문편집위원은 논문편집위원장과 논문부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논문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건축역사연구’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한다. • 논문편집위원장과 논문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임원선출위원회) • 임원선출위원회는 역대 회장, 부회장 및 재임 중인 이사와 직전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 임원선출위원회 운영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수입금)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금은 건축역사와 이론 및 비평에 관한 학문 진작과 건축문화 창달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각종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 받은 금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학술 연구용역비의 간접비 수익 5. 기타 수입
	제38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③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및 지 회	제44조(사무국 및 지회)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지회는 광역 시도 또는 권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회의 정회원 수는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지회 규약은 지회가 제정하되 본회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는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해야 한다. ⑤지회장은 지회 규약에 따라 선출하며, 운영 경비는 지회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본회가 해산한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회 정관의 개폐 및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모바일 또는 이메일 투표)

	①이사의 모바일 또는 이메일 투표를 통해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의결된 안건은 출석 이사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지닌다. ②이사의 모바일 또는 이메일 투표는 사전에 감사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모바일 또는 이메일 투표의 결과는 감사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③모바일 또는 이메일 투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998.9.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2026. 00. 00. 개정> <table><tr><th>직 위</th><th>성 명</th><th>임 기</th></tr><tr><td>회 장</td><td>박 언 곤</td><td>4년</td></tr><tr><td>부 회 장</td><td>이 상 해</td><td>4년</td></tr><tr><td>편집이사</td><td>김 정 신</td><td>4년</td></tr><tr><td>학술이사</td><td>윤 인 석</td><td>4년</td></tr><tr><td>총무이사</td><td>박 명 덕</td><td>2년</td></tr><tr><td>사업이사</td><td>김 봉 열</td><td>2년</td></tr><tr><td>홍보이사</td><td>이 왕 기</td><td>2년</td></tr><tr><td>교류이사</td><td>이 호 열</td><td>2년</td></tr><tr><td>감 사</td><td>홍 승 재</td><td>4년</td></tr><tr><td>감 사</td><td>박 서 홍</td><td>2년</td></tr><tr><td>이 사</td><td>박 선 회</td><td>2년</td></tr><tr><td>이 사</td><td>배 병 선</td><td>4년</td></tr><tr><td>이 사</td><td>김 경 표</td><td>2년</td></tr><tr><td>이 사</td><td>조 인 숙</td><td>4년</td></tr><tr><td>이 사</td><td>이 상 구</td><td>4년</td></tr><tr><td>이 사</td><td>전 봉 회</td><td>4년</td></tr><tr><td>이 사</td><td>홍 성 수</td><td>2년</td></tr><tr><td>이 사</td><td>한 재 수</td><td>4년</td></tr><tr><td>이 사</td><td>우 경 국</td><td>2년</td></tr><tr><td>이 사</td><td>임 석 재</td><td>2년</td></tr></table>	직 위	성 명	임 기	회 장	박 언 곤	4년	부 회 장	이 상 해	4년	편집이사	김 정 신	4년	학술이사	윤 인 석	4년	총무이사	박 명 덕	2년	사업이사	김 봉 열	2년	홍보이사	이 왕 기	2년	교류이사	이 호 열	2년	감 사	홍 승 재	4년	감 사	박 서 홍	2년	이 사	박 선 회	2년	이 사	배 병 선	4년	이 사	김 경 표	2년	이 사	조 인 숙	4년	이 사	이 상 구	4년	이 사	전 봉 회	4년	이 사	홍 성 수	2년	이 사	한 재 수	4년	이 사	우 경 국	2년	이 사	임 석 재	2년
	직 위	성 명	임 기																																																													
	회 장	박 언 곤	4년																																																													
	부 회 장	이 상 해	4년																																																													
	편집이사	김 정 신	4년																																																													
	학술이사	윤 인 석	4년																																																													
	총무이사	박 명 덕	2년																																																													
	사업이사	김 봉 열	2년																																																													
	홍보이사	이 왕 기	2년																																																													
	교류이사	이 호 열	2년																																																													
감 사	홍 승 재	4년																																																														
감 사	박 서 홍	2년																																																														
이 사	박 선 회	2년																																																														
이 사	배 병 선	4년																																																														
이 사	김 경 표	2년																																																														
이 사	조 인 숙	4년																																																														
이 사	이 상 구	4년																																																														
이 사	전 봉 회	4년																																																														
이 사	홍 성 수	2년																																																														
이 사	한 재 수	4년																																																														
이 사	우 경 국	2년																																																														
이 사	임 석 재	2년																																																														
부칙 (2001.9.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 정관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부칙 (2026.00.0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